

자체훈련계획서

(앞쪽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훈련과정 탐색결과					
연번	훈련기관명	훈련과정명	훈련직종	훈련방법	훈련기간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

-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,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~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,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.
 - ※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%~55%를 자부담하여야 하며,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
 - ※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은행계좌(신한, 농협)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(1개월)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단위기간(1개월)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(신한, 농협)로 직접 지급합니다.
 - ※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또는 EITC(근로장려금)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.
 - ※ 실업급여 수급기간(대기기간 미포함)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 - ※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일(중도탈락 포함)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HRD-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.
- 대규모기업 근로자, 영세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(소득 및 매출액)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RD-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·퇴실 시간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,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. 또한,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(1회 20만원 2회 50만원, 3회이상 100만원)이 차감됩니다.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뒤쪽)

